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44
------------	------

발의연월일 : 2017. 9. 15.

발의자 : 이 훈 · 위성곤 · 표창원

박 정 · 송옥주 · 박재호

신경민 · 권미혁 · 신창현

김한정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중대한 법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장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고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가 아닌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등록 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사업자 명의 변경 및 신규 석유사업 등록을 통해 재영업을 하는 등 행정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법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법위반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77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정지처분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14774호 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석유사업 등의 등록제 한)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법률 제14774호 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석유사업 등의 등록제 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 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정지처분 기간이 지 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 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을 이 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p> <p>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 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 은 경우</p> <p>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 항제7호에 따라 같은 조 제1</p>

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
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
은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
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
은 경우